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중 “영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(이하 “재활용사업자”라 한다)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 “폐기물 재활용업자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폐기물 재활용업자

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4(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)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법 제20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
2.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내역

② 공단은 해당 연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.

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

가. 양도·양수의 경우 : 양도·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·양수를 증명하는 서류

나. 상속의 경우 :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: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단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
별표 4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

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단,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

별지 제2호서식 및 제2호의3서식의 제출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출인	상 호	전화번호	법인등록번호
	주 소	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개인사업자만 기재)	

제출인	상 호	전화번호	법인등록번호
	주 소	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개인사업자만 기재)	

별지 제3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란의 ⑦ 중 “재활용량(대수×평균 중량)”을 “재활용량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1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란 다음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첨부서류	1.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1부 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가. 양도·양수의 경우 : 양도·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·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. 상속의 경우 :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: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2. 사업자등록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) ①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(이하 “공제조합”이라 한다)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	제6조(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영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(이하 “재활용사업자”라 한다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) 1부	3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 “폐기물 재활용업자”라 한다)----- -----
4.·5. (생략)	4.·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) ① (생략)	제7조(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· 2. (생략)

3. 재활용사업자

<신설>

제18조(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

② 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폐기물 재활용업자

제11조의4(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)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법 제20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

2.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내역

② 공단은 해당 연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.

제18조(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

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 신고)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(생 략)
2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(양도·양수의 경우에는 양도·양수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,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,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별로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) 1부

<신 설>

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 신고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

가. 양도·양수의 경우 : 양도·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·양수를 증명하는 서류

나. 상속의 경우 :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: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단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
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
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
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
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
해야 한다.